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황 규 철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2년 1월 3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5일

3. 제안이유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추진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업계 환경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21년 친환경차의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전년 연간대수를 뛰어 넘어 자동차 산업의 新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의 증가가 본격화되었음.

- 위와 같이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기조로 인하여 내연기관 정비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내연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역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 울산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며, 내연기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육성과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음.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측면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안정 등 지원과 성장 측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지원대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대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2. 1. 6. ~ '22. 1.1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산업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상위법(「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로 제정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확대 등 정부정책에 따라 급변하는 자동차업계의 환경변화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자동차 정비업계에 대한 인력개발과 신기술 교육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